
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21. 1. 15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- 아 래 -

회사명 (대표자)	등록번호	등록취소일	소재지	등록취소 사유
(주)윈브릿지캐피탈 (김동현, 김정국)	2010-230	2021.1.15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, 5층 502호(역삼동)	舊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[시행 2016.11.30.] [법률 제14273호, 2016.5.29., 일부개정] 제43조제1항제5호

끝.